2023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개정 안내문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상된 수가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수가 인상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전년대비 평균 4.70% 인상되었습니다.

- 다 음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분류	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022년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2023년도		1,885,000	1,690,800	1,417,200	1,306,200	1,121,100
	자부담	15%	282,750	253,620	212,580	195,930	160,275
		9%	169,650	152,172	127,548	117,558	96,165
		6%	113,100	101,448	85,032	78,372	67,266

○ 방문요양 급여비용(원)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본인부담	'23년수가	'23년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16,190	2,429
60분	22,380	3,357	23,480	3,522
90분	30,170	4,526	31,650	4,748
120분	38,390	5,759	40,280	6,042
150분	44,770	6,716	46,970	7,046
180분	50,400	7,560	52,880	7,932
210분	56,170	8,426	58,930	8,840
240분	61,950	9,293	65,000	9,750

* 문의전화 : (043)838-3080

2023. 01. 01.

다온방문요양센터장